

항 소 이 유 서

사 건 2001 노 20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
피고인(항소인) 최 열 외 5

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.

다 음

1. 원심 판결의 요지

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각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선고를 하였습니다.

2. 상당행위와 정당행위

그러나 원심에서 주장하였듯이 피고인들의 이견 행위는 형법상의 위법성 조 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즉 이견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내지는 형법 제 22조 소정의 상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.

3. 양형 부당

가령 유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, 피해자들의 선의, 이권 낙선운동의 사회적 이익성, 국민의 지지등 제반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과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.

4. 간략히 항소이유의 핵심을 제출하며, 자세한 논거에 대하여는 추후 공판과정에서 이를 제출하겠습니다.

2001. 9.

피고인(항소인)들의 변호인 **법무법인 한결**

담당변호사 차 병 직

변호사 백 승 현

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10부 귀중

- 2 -